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2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행위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09. 10.

전주시 덕진구청장



1.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1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0. ~ 2026. 09. 27. (17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하천법」 제33조를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오니, 2026. 09. 27.(일)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 (사진 등)를 전주시 덕진구청 공원녹지과 하천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한 내에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하천법」 제95조제5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청에서 대집행을 실시하고, 「행정대집행」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집행 비용은 행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덕진구청 공원녹지과 하천관리팀(☎063-270-653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